

농무부(USDA), GMO 의무표기안 확정 발표

LA지사

GMO 식품 표기법 최종 확정안 발표

- 지난해 12월 20일, 미 농무부(USDA)가 GMO 식품 표 기법의 최종 확정안을 발표했다.
- 'GMO(Genetically Modified Organism, 유전자변형식 품) 식품'이란 유전자를 조작하거나 변형시켜 만든 식품 으로, 콩, 옥수수, 감자 등 농작물의 면역력 강화와 생산 성 증대를 위해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하여 품종을 개량한 작물을 원료로 한다.

GMO 식품 표기법과 예외 대상

- 법안에 따라 GMO로 만든 식품을 제조 수입하거나 소 매로 식품을 판매하여 라벨을 붙여야 하는 업체는 해당 식품의 포장에 이를 표기해야 한다. GMO가 아닌 '생명 공학' 식품으로 표기하는 것이 특징이다. 이에 따라 'Bioengineered' 또는 'BE Foods'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.
- 표기법은 다양하다. 문구·심벌·전자, 디지털 링크(QR코 드)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, 소규모 제조업체 또 는 작은 포장 제품의 경우, 전화번호나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를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.
- 다만 식품의 재배 수확 또는 유통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 게 또는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유전물질이 식품에 포함 되는 경우, 유전물질이 5% 이하로 포함되어 있는 식품은 GMO 라벨 표기 대상에서 제외된다. 또한, GMO 작물 을 원료로 사용했지만 최종 제품에서 유전물질이 검출 되지 않은 식품도 라벨 표기 대상에서 제외되며, 유전자









USDA의 GMO식품표기 라벨

변형 사료를 섭취한 가축을 이용하여 만든 식품(우유, 달 걐 포함)도 제외된다.

• 해당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자발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, 연 매출액이 250만 달러 이하인 소규모 제조업체 에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자발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. 단 2022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업체가 본 규정을 의무적 으로 준수해야 한다.

규정의 실효성에 따른 찬반양론 존재

- 법안 발표 후 이에 대한 찬반양론도 분분하다. GMO 식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알리려는 취지가 라 벨 표기 방법으로 흐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. 라벨 표 기 방법이 너무 다양해 오히려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고, QR코드나 인터넷 웹사이트 등의 표기 방 법이 해당 기술을 사용하거나, 접하기 어려운 소비자들 또는 지역들에 대해서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비판 이 그것이다.
- 뿐만 아니라 제외된 식품에 따른 실효성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법안의 개정안이 발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 제할 수 없어, 향후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.